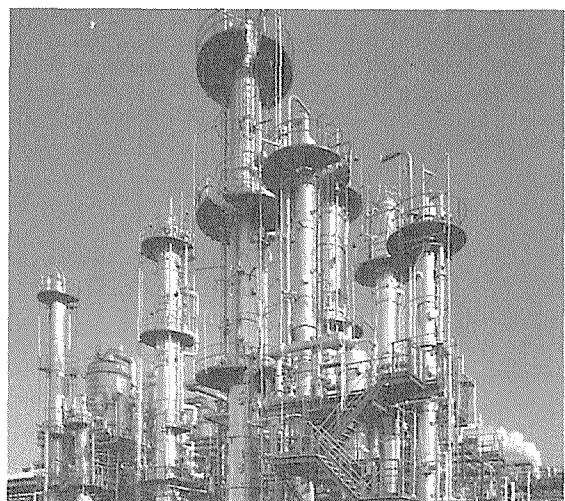


초점

석유사업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

- 통상산업부는 우리경제의 자율화·개방화 추세에 따라 석유산업의 경쟁촉진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석유사업법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,
 -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'95년 9월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.
- 금번 통상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석유사업법개정법률안은 '95년 9월 15일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별첨과 같으며 그 시행 시기는 사전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'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,
 - 석유정책업의 신규진입자유화를 위하여 개정되는 현행 석유정책업 허가제의 등록제 변경은 '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.
- 이와 같이 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통상산업부는 그동안 우리 석유산업이 오랜기간 정부관리체제(정부의 규제와 보호)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일시에 자유화할 경우 사전 준비 및 경험 부족으로 과당경쟁에 의한 유통질서의 혼란, 과잉투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하고,
- 우선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석유가격 및 수출입자유화, 석유판매업 신규 진입자유화 등을 시행하여 우리 기업이 충분히 자유경쟁체제를 경험·대응토록 한 후,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고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석유정책업의 신규진입 자유화를 시행하므로써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.
- 아울러 통상산업부는 금번 석유사업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 석유가격 및 수출입 자유화, 석유산업의 신규진입자유화등 석유산업전반에 대한 자율화가 달성됨으로써 민간 기업의 자율과 창의에 의한 석유산업의 시장기능활성화, 경쟁촉진 등이 기대되고, 나아가서는 석유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. ♣